

# 주 차 관 리 규 정

부천테크노파크 1단지

## - 목 차 -

제 1조 (목 적)

제 2조 (적용범위)

제 3조 (용어의 정의)

제 4조 (주차장 운영)

제 5조 (주차요금)

제 6조 (요금수납)

제 7조 (주차장 이용)

제 8조 (주차권 이용)

제 9조 (준수사항)

제 10조 (주차, 출차의 제한)

제 11조 (사고의 신고의무)

제 12조 (손해배상)

제 13조 (면책사항)

제 14조 (기 타)

### 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부천테크노파크1단지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과 이용자의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제 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한다.

### 제 3조 (용어의 정의)

- 1) “무료주차”란 입주사 임직원(이하 “입주자”라 한다.)소유 차량으로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무료주차로 지정된 차량의 주차를 말한다.
- 2) “월정 주차”란 입주자 소유차량으로 월정주차비를 납부한 차량의 주차를 말한다.
- 3) “시간 주차”란 전 1), 2)항 이외의 차량으로 부천테크노파크 주차장에 임시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.
- 4) “유료주차권”이란 입주사 방문차량의 시간주차에 대한 요금을 유료주차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.

### 제 4조 (주차장 운영)

- 1) 무료주차 차량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운영한다.

가) 입주자에 한하여 무료정기주차 권을 발급한다.(정기주차 권 카드 분실 시 입주자는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.)  
나) 주차권을 발급 받은 차량이 교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주차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.(만약 기존 주차권 승계 사용 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한다)  
- 2011.05.16 수정

- 가) 입주사에 무료주차로 배정된 차량에 한하여 무료주차 차량을 지원본부에 등록하고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.
  - 나) 등록된 차량이 교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이력을 지원본부로 제출하여 주어야 하며, 미제출로 인한 시간주차 요금부과는 입주자가 책임진다.
- 2) 월정 주차는 입주사에 배정된 차량에 한하여 입주자 소유차량으로서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월정주차비를 납부하고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.
  - 3) 시간 주차는 전 1), 2)항 이외의 차량으로서 주차시간에 따라 소정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.

### 제 5조 (주차요금)

1) 정기주차는 무료로 한다.  
2) 월정주차는 1대당 33,000원(VAT포함)으로 하고 선납 한 차량에 한해서 관리사무소가 월정 주차권을 발급한다. - 2011.05.16 수정

- 1) 무료주차는 요금을 무료로 한다.
- 2) 월정주차는 1대당 33,000원(VAT포함)으로 하고 선납 한 차량에 한해서 지원본부가 월정주차 차량으로 등록한다.
- 3) 월정주차의 사용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한다.
- 4) 월정주차 개시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잔여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산정하여 적용한다.

5) 월정 주차권을 발급 받고 퇴거, 차량매도, 폐차 등으로 인하여 월정 주차 미사용 시 잔여일수에 대비한 주차비 반환은 청구 할 수 없다. - 2011.05.16 수정

5) 월정 주차비를 납부하고 퇴거, 차량매도, 폐차 등으로 인하여 월정 주차 미사용 시 잔여일수에 대비한 주차비 반환은 청구 할 수 없다.

6) 시간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은 입주사의 방문 확인을 받은 차량만 무료 적용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차량은 무조건 기본료 1,000원을 적용하며, 다음 30분당 주차권 2매까지 사용하며, 2시간 이후부터는 30분당 현금 500원으로 한다. - 2011.05.16 수정

6) 시간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은 무조건 무료이며, 다음 30분당 유료주차권 1매 또는 30분당 현금 500원으로 한다.

7) 매일 21:00부터 익일 06:00까지는 무료로 적용한다.

### 제 6조 (요금수납)

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차 할 때 납부한다.

### 제 7조 (주차장 이용)

1) 주차장을 출입 할 때에는 주차안내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.

2) 주차는 주차장 백색선 내의 지정된 장소에 하여야 하며 관리상 주차장소를 지정 할 경우 지정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.

3) 주차장 이용시간은 24시간 개방한다. 단, 후문의 출구는 23:00부터 07:00까지 폐쇄 한다. - 2011.05.16 수정

3) 주차장 이용시간은 24시간 개방한다.

4) 남문(정문)출입구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개방한다. 단, 동문(후문)출구는 23:00부터 익일 06:00까지 폐쇄 한다. 동문(후문)입구는 토요일 23시부터 월요일 6시까지, 일요일, 공휴일은 종일 폐쇄하고, 동문(출구)은 토요일 18시부터 월요일 6시까지, 일요일, 공휴일은 종일 폐쇄한다. - 2011.05.16 추가

### 제 8조 (주차권 발급)

1) 입주자는 정기주차 및 월정주차에 해당되는 차량의 리스트(소정의 양식)에 입주사 대표의 날인을 받아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주차비를 납부하여야 익월에 계속해서 발급된 주차권을 사용 할 수 있다.

(정기주차 권은 매월 변동 없이 사용하고, 월정 주차비는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.)

2)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자가 분실에 대한 책임 및 재발급 비용의 의무를 진다.

3) 시간 주차 권 분실 시는 고정 액 30,000원의 주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4) 정기주차권 사용자가 월중 변동된 경우 즉시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.

5) 주차 티켓은 운전석 좌측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. - 2011.05.16 수정

### 제 8조 (주차권 이용)

1) 무료주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한다.

가) 입주사의 무료주차 배정 기준은 공장세대는 248㎡당 2대, 상가 세대는 124㎡당 1대로 한다. 단, 기숙사는 무료주차를 배정하지 않는다.(공장동은 반올림, 상가

동 및 기숙사는 올림으로 한다)

- 나) 차량의 교체 및 자동차 점검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 변경 시 차량변경신청서(소정의 양식)와 증빙서류 제출 후 지원본부의 승인 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.
- 2) 월정주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한다.
- 가) 입주사의 월정주차 배정 기준은 공장세대는 248㎡당 1대, 상가 및 기숙사는 세대 당 1대를 배정한다.(공장동은 반올림, 상가동 및 기숙사는 올림으로 한다)
- 나) 입주자는 월정주차에 해당되는 차량의 리스트(소정의 양식)에 입주사 대표의 날인을 받아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주차비를 납부하여야 익월에 계속해서 등록된 차량을 사용 할 수 있다.
- 다) 기간 만료 전 재연장을 하지 않을 시 시간주차 요금으로 부과한다.
- 라) 차량의 교체 및 자동차 점검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 변경 시 차량 변경 신청서(소정의 양식)와 증빙서류 제출, 지원본부의 승인 후 변경, 이용할 수 있다.
- 3) 시간주차에 해당되는 차량은 입차 시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무발권으로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출차 시는 1시간무료 이후 30분당 500원을 현금 또는 유료주차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4) 유료주차권은 각 입주사에서 500원권을 최소 10매 단위로 지원본부로부터 구입하고 입주사 방문고객에게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단, 전출 시 환불은 10매 단위로만 환불된다.
- 5) 무료주차 및 월정주차 차량의 교체 및 자동차 점검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 변경 시 차량변경신청서(소정의 양식)와 증빙서류 제출 후 지원본부의 승인 후 주차 가능하다.

## 제 9조 (준수사항)

- 1) 주차장 내에서는 표식,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10Km/h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추월을 해서는 안 된다.
- 2)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및 폭발성 위험물, 유해물질, 악취 물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.
- 3) 차량에 귀중품 및 도난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두어서는 안 되며 하차 시에는 차량의 문을 반드시 잠가야 한다.
- 4) 주차장 내에서는 긴급한 사항 이외에는 경적을 사용 할 수 없다.
- 5) 주차장 내에서는 차량의 수리, 급유, 세차 등을 할 수 없으며 고장 난 차량을 방치 할 수 없다.
- 6) 기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7) 주차권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. 무단 복제한 주차권을 사용하다 관리 사무소에 발각 될 시에는 한 달간의 월정 주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2011.05.16 삭제

- 7)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- 2011.05.16 신규
- 가) 화물 하역장 앞에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다.
  - 나) 화물 상하차가 끝나면 즉시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여야 한다.
  - 다) 화물전용 주차장(화물 하역장앞과 중동대로변 주차장)에는 1톤 이상 화물차량과 승합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. 일반 승용차로 제품을 납품 시 화물 상하차가 끝나면 즉시 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한다.
  - 라) 입주사 임직원의 모든 승용차는 주차타워를 이용한다.
  - 마) 고객주차장(상가동옆)은 우리 단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입주사 임직원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.
  - 바)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법정주차장으로 일반 차량의 주차가 금지되며, 장애인용 차량은 장애인 차량등록증을 반드시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주차한다.  
일반차량 및 장애인차량등록증 미부착시 부천시로부터 과태료가 부과 된다.
  - 사) 주차 구획선 내에 정확히 주차하고, 전면주차를 하여야 한다.
- 8)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이용 시 주의사항
- 가) 입. 출차 시 번호인식이 가능하도록 5km/h 이하로 유지하고 진입한다.
  - 나) 입. 출차 시 앞. 뒤 차량의 거리를 1.5M이상 유지해야 한다.
  - 다) 지원본부 차량등록과 차량번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일일주차요금이 부과되므로 차량등록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.
  - 라) 차량 미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번호판에 장식물이나 손상이 없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 - 마) 월정주차의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재연장을 하지 않을시 일일요금이 부과되므로 만료 전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- 바) 차량번호 오류등록 및 만료 전 주차요금 미납으로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책임진다.
- 9) 고객주차장 이용 안내
- 가) 고객주차장은 우리 단지를 방문하는 1시간이내 방문객이나 고객만 이용한다.  
장시간 주차 방문객이나 고객은 주차타워를 이용한다.
  - 나) 고객주차장 운영시간은 10:00~22:00까지 입니다.
  - 다) 고객주차장 이용 시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제 10조 (주차, 출차의 제한)

다음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 또는 출차를 제한한다.

- 1) 주차장의 시설, 기물 또는 타 차량을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
- 2) 차량에 인화물, 폭발물을 적재하였을 때
- 3)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
- 4)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카드를 제시하지 않거나 주차 시간에 해당되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- 2011.05.16 수정
- 4) 주차 시간에 해당되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
- 5)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

**제 11조 (사고의 신고의무)**

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나 주차장의 시설, 차량 등의 훼손 피해가 생겼을 경우 가해자 또는 목격자는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 12조 (손해배상)**

본 주차장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주차장의 시설, 차량 등의 훼손 피해가 생겼을 경우 가해자는 그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.

**제 13조 (면책사항)**

관리주체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그 적재물 또는 부착물 등에 대하여 도난,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**제 14조 (기 타)**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의 관리규약에 의한다. - 2011.05.16 수정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테크노파크1단지의 관리규약에 의한다.

① 본 규약은 2011년 5월 1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